

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「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1호에 따른 "문화예술 활동을 업(業)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"이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가.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

나.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문화예술 관련 저작물이 있는 사람

다. 창작, 실연(實演),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소득이 있는 사람
라. 그 밖에 가호 내지 다호에 준하는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

제3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

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목적, 범위,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제4조(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, 장애예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되도록 하고, 장애 유형·성별 등을 고려하여 문화예술 각 분야 인사가 골고루 포함되도록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5조(실태조사의 내용 등)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(이하 "실태조사"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창작·전시·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 현황
2. 창작·전시·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 여건
3. 취업상태 등 고용 현황
4. 문화예술 활동 관련 소득에 관한 사항
5. 고용보험,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험가입 실태에 관한 사항
6. 장애예술인 관련 문화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
7.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 현황 및 운영실태
8.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장애예술인 지원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,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(문화시설 개선비용 지원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(이하 "개선비용"이라 한다)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다만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라 시설주등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비용

에 대하여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장애예술인이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,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 비용
2. 장애예술인의 공연·전시 등 작품의 제작·연습·발표 등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 비용

② 제1항에 따른 개선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할 수 있다.

③ 개선비용의 지원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령으로 정한다.

제7조(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(이하 "전담기관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
· 법인 또는 단체일 것
2. 전담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근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할 것
3. 전담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할 것

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

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,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알리고,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⑤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
2.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에 대한 집행계획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8조(권한의 위탁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
2. 법 제10조에 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에 관한 업무
3. 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
4. 법 제12조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에 관한 업무
5.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받은 전담기관과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